

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***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***2020 중견기업일자리 박람회(2020.3.30.), 외국인 투자기업채용박람회(2020.4.6.-4.7)가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**

2020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

2019.4.17.(수) 10시~16시 | SETEC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제 1·2 전시실 3호선 학여울역

주최 서울특별시
주관 서울시장재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문의 서울시장재인취업박람회 사무국 1588-1954

201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
함께서울 누리축제

일시	2020년 4월 20일(월) 10:00~16:00		
장소	SETEC(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) 제1, 2 전시실 - 3호선 학여울역		
참가대상	300개 기업 및 10,000여 명의 구직 장애인		
행사구성	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구직자		
주최	서울시		
주관	서울시장재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		
기업신청기간	서울시장재인취업박람회 사무국문의	개인신청기간	행사당일 참석
문의처	070-4287-1625	FAX	02-796-9857
담당자		E-MAIL	jobable@hanmail.net
사이트(출처)	http://job.seoul.go.kr/expo/index.jsp		

*자료출처 : <http://job.seoul.go.kr/expo/index.jsp>

고용노동부,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2천만원 지원(칸막이 등)

- 콜센터 일제점검(3.13.~18.)과 병행, 실효성 제고 -
- 공공기관·금융기관 등 원청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-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“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*을 마련하여 일제 점검을 하고 있으며, 이와 병행하여 콜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”고 밝혔다.
-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비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(지원대상)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콜센터업체이며, 전국 약 1,100여개소가 해당된다.
 - * 중소기업 콜센터는 코로나19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근무환경임에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한 실정
 - (지원내용) ①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비용, ②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, ③ 감염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용 등이며,
 - (지원비용) 콜센터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%이며, 총 2천만원 한도이다.
 - (지원절차)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고 공단의 검토·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이와 병행하여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관내 콜센터 및 콜센터 위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활성화, 칸막이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원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.
-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현재 콜센터 일제점검*을 실시(3.13.~18.), 코로나19 예방지침 이행을 지도하고 있으며, 50인 미만 중소기업 콜센터업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.



*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, 사업장 방문, 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

- ▲ (10인 미만: 840개소) 지침, 자체점검표를 실시 및 개선지도
- ▲ (10~50인 미만: 256개소)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침이행 지도·점검
- ▲ (50인 이상: 262개소) 전담 감독관 지정, 사업장 지도·점검 및 매주 모니터링

《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주요내용 》

- (예방체계) 전담 조직(전담자) 지정,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전체 종사자 안내·전파
- (환경개선) 책상간격 조정으로 근무공간 밀집 최소화 및 고정 근무자리 배치, 칸막이가림막 설치
- (근무형태) 동시 근무인원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, 시차출퇴근, 점심시간 시차운용 등 활용
- (위생관리) 위생용품 비치,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사무실 집기류·통로 주기적 소독·환기
- (의심증상 발생) 하루 2회 이상 발열·호흡기증상 여부 확인, 증상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

-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금융, 통신회사 및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가 콜센터 환경 개선을 적극 지도·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하면서,
 - “콜센터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 공공누리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김상중 사무관(☎ 044-202-7723) 또는 산업보건과 고병곤 사무관(☎ 044-202-77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

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

- ◇ 1조 2,78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확정
- 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최소화 및 민생안정 지원

□ 3월 17일,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6개 사업, 1조 2,783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

1 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」 신설

-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<추경> 2,000억원, 신규 <지원안> 대구·경북 700억원, 15개 광역자치단체 1,300억원
 - ** 영세사업장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, 단기일자리, 직업훈련 등 지원

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

2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

- 저임금 근로자(약 230만명)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(4개월)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
 - * <본예산> 2조 1,647억원 → <추경> 2조 6,611억원(+4,964억원)
 - *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月 7만원, 10인 이상 기업은 4만원 추가 지원
 - ▲ 5인미만: 11→18만원 ▲ 5~9인: 9→16만원 ▲ 10인이상: 9→13만원

3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

-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 확대(274 → 277만명, +3만명)
 - * <본예산> 1조 1,490억원 → <추경> 1조 2,086억원(+596억원)

긴급 가정돌봄 지원 강화

4]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및 지원수준 강화

-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 (7,500명 → 2만명, +1.25만명)

	현 재	추 경
임금감소 보전금	24-40만원	40-60만원
간접노무비	20만원	40만원
대체인력채용 지원	30-60만원	30-80만원

* <본예산> 144억원, 7,500명 → <추경> 508억원(+365억원), 2만명

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

5]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

<본예산> 2,317억원 → <추경> 2,825억원(+508억원)

-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,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

* ▲저소득층: 5 → 7만명(+2만명) ▲청년: 5 → 8만명(+3만명)

-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('20년, 2,771억원)을 일부 전용하여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⇒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



*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 * 최대 3개월 지원

* 구직활동계획서 작성, 상호의무협약 체결 →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거쳐 수당 지급

6]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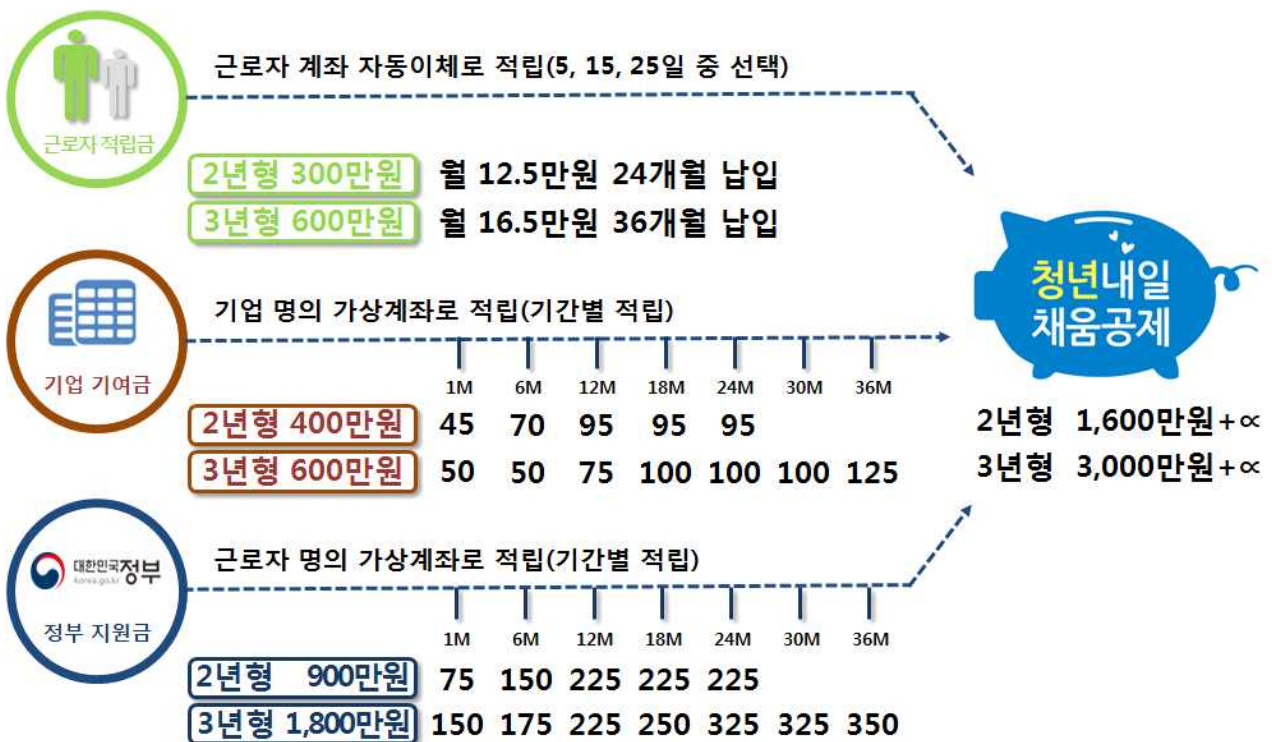
- 올해 목표인원 29만명(신규 9만+기존 20만)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소요 반영

<본예산> 9,909억원 → <추경> 1조 4,260억원(+4,351억원)

 공공누리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백영식 서기관 (☎044-202-70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

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16.7월)
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- 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*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-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 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 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“)
 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[총 4개소]

운영기관명(대표전화)	운영기관명(대표전화)
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2006-9583)	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
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	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

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

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1	고용창출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
2	고용안정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 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 ③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 ④ 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
3	고용유지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유지지원금, ② 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
4	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

2 중복지원 사업 대상

양 장려금	중복 시	지원 비율
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	고용창출장려금	+ 70% 추가지원
	고용안정장려금	+ 100% 추가지원

3 문의처

○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0~5)

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고용장려금 지원사업		지원내용
고창 장려금 공출금	일자리 함께하기 지원	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 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2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청년추가 고용장려금	· 청년(만15~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, 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) 사업주 [청년 추가채용 1인당] 연 최대 900만원, 3년지원
	국내 복귀 기업 지원	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
	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	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
	고용촉진 장려금 지원	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	정규직 전환지원	·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증가 보전금: 월 최대 60만원, 간접노무비 월 30만원
고안 장려금 공정금	위라벨일자리 장려금	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
	일.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	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
	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	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유산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
	고용유지 지원금	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고유 지원금	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	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	·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. 다만, 일지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
장년· 고령자 고용 장려금	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	·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하는 사업주 [지원수준]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(분기별 신청), 최대 2년간 지원